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30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3581 지방세 경정 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
피 고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고○○
변 론 종 결 2024. 7. 24.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18,489,670원, 지방교육세 38,448,400원, 농어촌 특별세 25,632,25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제출한 2023.



10.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의 청구취지는 이와 같이 선택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일대 토지 476,261.2㎡(1공구 296,986.7㎡, 2공구 179,274.6㎡)에서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9. 12.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준공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인 ○○ ○○구 ○○동 ○○-○ 외 65필지 도로용 토지 등 13,59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20. 5.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경과 같은 해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27,874,206,0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578,679,540원, 농어촌특별세 28,607,480원, 지방교육세 42,911,250원 합계 650,198,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무상양여를 받은 토지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0. 11. 2.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4. 이를 거부하였다. 당시 피



고가 정정청구 거부사유로 밝힌 바는 아래와 같다.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의 특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고 규정함.

○ ○○○○○○○공사는 ○○구 ○○동 ○○-○의 65필지의 구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특별시공고제2019-3168호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우수지를 중량구청에 무상으로 귀속 할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한 구 공공용지중 신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7.28.선고 2010두6977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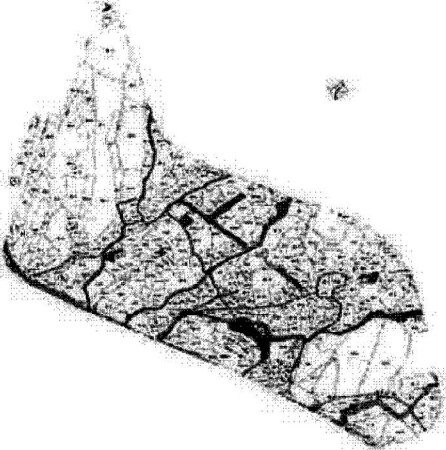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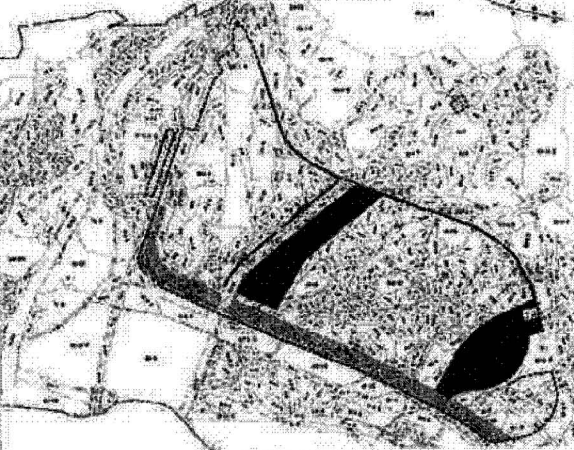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의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중량구청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 경정청구를 기각함.

라. 원고는 위 경정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는바,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취득한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토지(○○ ○○구 ○○동 일대 토지 476,261.2㎡)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을 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면적(아래 도면 중 용도폐기 이전의 도면과 신설된 도면 중 상호 일치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2023. 7. 5. 내렸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해당 부동산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심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그 일부가 국가 등에 대체 공공시설용 토지로 재편입(귀속)될 것임이 확정되었음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해당 면적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처분청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된 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라는 취지였다.

<용도폐기 후 신설되는 공공시설용지 도면>

중전의 공공시설 무상귀속도면	새로 설치된 무상귀속도면
시행지귀속분 공공시설도 	지자체귀속분 공공시설도 

마. 이에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23. 8. 18.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67,627,950원만큼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한 2020. 11. 24.자 경정 거부처분 중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30

납세자	성 명	○○○○○○공사		주 민 등 록 번 호	111171-*****
	주 소	○○시 ○○구 ○○로 000			
	물 건 지	○○구 ○○동 00-0 외 65필지			
법 정 신 고 일		2020.02.17.	사유발생일	2023.07.05.	
최 초 신 고 일		2020.05.22.외	결정(경정)청구일	2020.11.02.	
결 정 (경 정) 청 구 사 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부동산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함.			
결 정 (경 정) 을 하 지 아 니 하 는 사 유		경정청구 거부결정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조심 2021지1822)으로 구청 귀속분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해 취 득세를 85% 감면 처리하고 환급하고자 함.			
구 분		당 초 세 액	경 정 (정 당) 세 액	환 급 세 액	
취 득 세		578,679,540	518,489,670	60,189,870	
농 특 세		28,607,480	25,632,250	2,975,230	
지 방 교 육 세		42,911,250	38,448,400	4,462,850	

이는 원고가 무상양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이 구청 귀속분과 구청 미귀속분으로 구분한 다음, 후자에 관하여는 재편입이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을 토대로 피고가 취득세 등을 재산정한 것이었다.

○○동 00-0 외 31필지			
	구청 귀속분	구청 미귀속분	합계
과표	2,223,109,701원	5,363,272,020원	7,586,381,721원
○○동 00-0 외 3필지			
	구청 귀속분	구청 미귀속분	합계
과표	76,394,565원	23,759,710원	100,154,275원
○○동 00-00 외 28필지			
	구청 귀속분	구청 미귀속분	합계
과표	1,615,986,639원	17,830,546,210원	19,446,532,849원
○○동 000-3필지			
	구청 귀속분	구청 미귀속분	합계
과표	51,473,367원	565,425,900원	616,899,267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종전 공공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무상귀속받았고, 이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구에 무상귀속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이 적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직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률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와 적용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20. 7. 16. ○○특별시조례 제7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 조례'라고만 한다) 제23조에 의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은 결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상, 취득세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지방교육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다만 국가 등에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제2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는,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예외를 다시 설정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20.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 1. 1.부터 2024. 12. 31.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2020. 12. 31.까지는 한시적으로 취



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후로는 50% 감면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¹⁾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내린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가운데 국가 등에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재편입(귀속)되는 부분의 면적을 확인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감액 경정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 가운데 국가 등예의 귀속이 사실상 확정된 면적 부분에 한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였던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의 적용범위를 피고가 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가운데 국가 등예의 귀속이 사실상 확정된 면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위 제83조의2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할 따름이다.

아울러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와 적용시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와 관련된 구 ○○시 조례 제23조의 규정 내용을 순차적으로 들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85% 감경해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100% 면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시 조례 제23조는 같은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에 관한 판례인바,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 자체와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 내지 취지를 담은 조항에 관하여 법리를 판시한 판례로서 이 사건에 참조가 된다.



면제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반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관하여는 구 ○○시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시 조례 제2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취득세에 관한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원고 주장도 전부 이유 없음으로 귀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



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삭제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20.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끝.